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 하지만 노동부 자문이 늦어지는 사이 일부사건은 의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사안 등을 포함해 전체 41건 중 17건 (41%)이 자문없이 종료됐다.
-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혹시라도 자문 결과가 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힐까 봐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문은 노동위원회 판단과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한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의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지원이 곤란한 경우
-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를 취소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한 것은, 중복 판단 등을 방지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우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님

○ 아울러 종결된 사안 중 대부분은 사용자성 여부와 직접 관련 없는 단순 문의이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현저히 부족하여 보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질의자가 질의를 취소한 경우임

□ 고용노동부는 첫 자문사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출자료 보완을 요청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 받아 자문회의를 통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임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담 당	서기관	유현경 (044-202-7609)

